

2024년도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는 화성시 관내 도시형 소공인 육성을 위해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 3.

(재)화성산업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2.~9.
- 사업대상: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
- 추진일정

기업모집	평가·선정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시제품 제작	정산 및 성과물 관리	결과보고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소공인	소공인	진흥원	진흥원
2024. 3.	2024. 4.	2024. 5.	2024. 5.~8.	2024. 9.	2024. 9.

* 추진일정은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지원사항)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최대 1,000만원/1社(공급가액 기준) 지급
 - * 양산 관련 비용은 지원 불가
 - 이 외 선정기업 대상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공동장비 무상 활용 연계지원
- (지급방식) 100% 선지급(사업비 사용계획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출)
- (지원비목) 재료비, 위탁사업비(시제품 설계, 금형 설계 등)

비목	세부내용
재료비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 양산용 재료 및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료 사용 불가
위탁사업비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외부 위탁비용 - 시제품 설계(CAD) 및 목업, 금형 설계비용 - 시제품 디자인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설계비용

*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선정한 비목이며, 「화성산업진흥원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은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예정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시 타 비목 계상 건 승인 불가, 지급 이후 정산 과정에서 비승인 비목 사용 발견 시 환수 조치

◆ 모집개요

□ 모집정원: 12개사 이내

* 평가 과락자 발생 등으로 인한 모집 정원 미달 시 추가모집 실시할 수 있음.

□ 접수기간: 2024. 4. 2.(화) 9시~2024. 4. 9.(화) 16시까지

* 접수기간 전에는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만 가능함.

□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접속(hipa.hscity.go.kr) → 회원가입(승인필요) → 지원사업공고 →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클릭 후 참여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 1) 신청서식은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모든 요구서류 구비 후 홈페이지에 업로드
- 2) 방문·이메일 제출 불가(플랫폼 이외 경로로 신청한 경우 무효)
- 3) 최종제출 이후 수정 불가
- 4) 마감 당일에는 접수가 물릴 수 있으므로 미리 회원가입 후 제출할 것을 권고

□ 지원자격: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화성시 소재 개인 또는 법인 기업

* 기본요건 '가', '나' 두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자격 세부내용																																				
기본요건	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도시형 소공인*인 기업 * 도시형 소공인: ①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면서,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나.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화성시 전역) 주요 업종^[참조]을 영위중인 기업																																				
	[참조]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주요업종(중분류 기준 10가지) - 아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기준이며, 해당 중분류 업종의 대분류는 모두 "C (제조업)"임. *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노랑셀 참조 - 국세청 업종코드 조회 후 표준산업분류코드로 변환 결과 아래 10가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 요망																																				
	<table><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중분류명</th><th>대분류</th><th>중분류</th><th>중분류명</th></tr><tr><td>C</td><td>20</td><td>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td><td>C</td><td>27</td><td>의료, 정밀, 과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td></tr><tr><td>C</td><td>21</td><td>의료용 물질 및 의약 제조업</td><td>C</td><td>28</td><td>전기장비 제조업</td></tr><tr><td>C</td><td>22</td><td>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td><td>C</td><td>29</td><td>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td></tr><tr><td>C</td><td>25</td><td>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td><td>C</td><td>30</td><td>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td></tr><tr><td>C</td><td>26</td><td>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td><td>C</td><td>31</td><td>기타 운송장비 제조업</td></tr></table>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명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명	C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	27	의료, 정밀, 과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 제조업	C	28	전기장비 제조업	C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	31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명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명																																
C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	27	의료, 정밀, 과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 제조업	C	28	전기장비 제조업																																
C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관내 소재기업 인정범위	화성시 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	3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하면 관내기업으로 인정																																			
	화성시 내 공장이 위치한 기업																																				
	화성시 내 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가 위치한 기업																																				
요약	① 소공인 ② 집적지구 주요 업종코드 영위 ③ 화성시 관내 기업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 제외대상

○ 부적격 대상이거나 중복수혜로 판단되는 자는 지원제외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부적격 대상

- 1) 공고 마감일 기준 소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단, 소공인 자격을 상실한 연도의 다음년도부터 3년 이내인 경우 소공인으로 인정
- 2) 공고 마감일 기준 예비창업자(사업자 미등록자)인 경우
- 3) 공고 마감일 기준 화성시 외 지역 소재기업(지점은 관내 기업으로 인정불가)인 경우
- 4) 신청서, 발표자료 등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 5)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6)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7) 휴·폐업 혹은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8) 그 외 제재사항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되어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중복수혜 대상

- 1) 2024년도 딥테크/와우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2) 동일아이템 동일목적으로 타 정부기관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수행 중인 경우
- 3) 그 외 선정 이후에도 중복수혜 사항 발생 시 제재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제출서류 목록

- (필수제출 서류) 적색 '●' 표시, (선택제출 서류) 검은색 '●' 표시

업로드 단계 ☞단계상정보입력☜	제출항목	비고
「제출서류 업로드」	● (서식 제1호) 사업신청서	한글 또는 PDF 형식,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서식 제2호) 자가점검표	
	● (서식 제3호) 서약서	
	● (서식 제4호) 주업종 코드 확인서 1부 ↳ 홈택스 조회화면 대체자료 1부	확인 방식 아래 [참조] 4번, 5번, 6번 확인 아래 [참조] 5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에서 발급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1부	법인기업인 경우 필수
	● 공장등록증 1부	관외 본사를 둔 관내 공장 등록기업인 경우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	관외 본사를 둔 관내 연구소 등록기업인 경우 필수
「필수정보 조회 및 제출」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1부	좌측 3가지 항목의 경우 파인드 시스템 또는 직접제출 방식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참조]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1) 발급서류는 모두 공고일 기준 3개월 전 이내 발급분 제출
- 2) 파인드 시스템: 민원발급서류 자동 업로드 기능, '직접제출' 버튼 누르면 해당 서류도 수동 업로드 가능
- 3) 소상공인확인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5일~10일 내외 소요 될 수 있음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또는 온라인 자료제출 등 1811-6508)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인정불가

4) [(서식 제4호)주업종 코드 확인서] 작성 시, **아래 방법대로 코드 확인하여 작성**

* 불임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 연계표는 통계청에서 배포하는 자료로, 단순 참조를 위한 자료임.

<주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 방법>

-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주업종명(업종코드)조회**
 - 순서: 로그인(필수) ▶ MY홈택스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주업종명(업종코드) 조회
 - 홈택스 문의처: 국번없이 126
- 2) 조회 후 **두 가지 모두 수행**
 - 2-1) 불임의 “산업분류코드 자동변환기” 에서 국세청 조회 업종코드(6자리) 입력 후, **표준산업분류코드로 변환** ▶ [(서식 제4호) 주업종 코드 확인서] 에 **주업종 코드 작성**
 - 2-2) [(서식 제4호) 주업종 코드 확인서]에 홈택스 조회 화면 **캡처본 첨부**
- 3) 확인서 하단에 인감 또는 자필서명 날인 후 제출

5) 기본요건에서 제시된 10가지 업종을 영위 중임에도 불구하고 4)번 방식대로 주업종 체크가 어려울 경우, [(서식 제4호)주업종 코드 확인서] 작성 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으로 주업종 작성 후 홈택스 조회 캡처본 대신 **아래 세가지 서류 중 1가지 선택하여 대체 제출**

<대체서류>

택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및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必)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면세사업자) 최근 1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 선정 및 평가

□ 선정 방식 및 기준

○ (선정방식) 서류 평가 후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선정절차								
신청 및 접수	➤	적격확인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 선정
진흥원 홈페이지		소공인 여부, 업종코드 등 확인		적격확인 결과 2배수 초과 시 추진		성장성 등 평가		12개사 선정

○ (평가기준표) 서류 및 발표 기준 동일

평가 항목		점수
기술성	- 기술 구체성 여부 - 기술의 구현 적정성 여부 - 기술의 파급성	30
시장성	- 시장진출 및 성과창출 가능성 여부	30
필요성	- 지원 기업 및 제품의 지원 필요성 - 본 사업목적과 신청 제품/기업과의 적합성	20
성장 가능성	- 향후 성장 가능성 - 비즈니스모델의 사업 확대 가능성	20
합 계		100

□ **적격확인:** 소공인 여부, 표준산업분류코드 일치 여부 등 확인

□ **서류평가**

- (평가방식) 3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등 평가
- (과락기준)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 (합격배수) 과락기준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2배수(24개사) 까지
 - 적격 통과기업이 2배수(24개사) 이하일 경우 서류평가 없이 발표평가로 넘어감.
 - 동점일 경우 상위배점 항목(기술성>시장성>필요성>성장 가능성)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 (평가일정) 점수 마감 이후 **2주 내외** 소요
- (결과공고) 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공고·공지’ 게시판 공고

□ **발표평가**

- (평가방식)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발표평가 진행
- (평가일정) 일정 및 장소는 **서류평가 결과공고 시 별도 안내**
- (평가시간) 기업당 총 10분(발표 및 질의) 내외 부여
- (최종선정기준)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평가위원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최저점 제외한 평균점수)인 자
 - 적격자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공고 실시할 수 있음.

□ **결과공고**

- 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공고·공지’ 게시판 공고
 - 발표평가 결과공고는 평가일 이후 **2주 내외** 소요

◆ **향후일정 및 유의사항**

□ **향후일정**

- (추가모집 공고) 필요시 발표평가 결과공고 내 안내 예정
 - (협약체결) 최종 선정기업 협약체결
 - 협약기간은 5월 중 시작하여 추석 전까지 약 4개월 가량 체결 예정
 - 협약 전 **화성산업진흥원 성과관리 시스템 ‘질링스’ 가입 확인예정, 미가입시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 지급) 지원금 교부신청 절차 추진 및 지원금 지급
 - 사업비 통장으로 100% 선지급하며, 지급기일(협약시작일)보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 자비사용 후 지원금액에서 공제가능
 - 외부 회계법인* 통해 정산 추진 및 승인금액 확정, 불인정금 및 미사용액은 환수
- * 외부 회계법인 정산 위탁비용은 지원금 내 계상(약 20만원 내외)하여 정산 처리

□ 유의사항

- 사업 참여 대상기업으로 선정 시 진흥원 지원사업 성과조사를 위한 관리시스템(질링스) 가입 필수 - 사업 선정 시 성과관리 시스템 가입링크 안내 예정, 미가입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한 일체 서류 및 물품은 평가를 위해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음.
- 참가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기준), 기타 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참가자에게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결과 통보 또는 협약 이후 일방적 참가 취소 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참가자는 향후 성과보고서, 결과물, 설문조사, 실적 제출 등 진흥원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 (재)화성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팀

- ☎ 031-377-3943, ✉ k jy@hsbiz.or.kr

*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요망

** 상기 공고내용 및 평가방식은 사업운영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재)화성산업진흥원장

참조 1 도시형 소공인 정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3958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제2조(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목(이하 “도시형소공인 업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참조 2 업종분류 기준 참고

□ 업종구분이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9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❶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❷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가능